

안녕하십니까, 대한신경과학회입니다.

대한병원협회 지도전문의교육에 기초교육이 추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기초교육 안내 및 정기교육 최초 이수연도에 따른 재이수 시기 예시를 연도별로 추가하였사오니

본인 재이수 시기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기초교육 안내 (모든 지도전문의 대상)

구분	교육대상	교육주기	교육방법
기초 교육 (4시간)	▷ 기존 지도전문의 종전 전공의법에 따라 지도전문의로 지정 받은 자(지도전문의 교육 이수자)	전공의법 제2조(지도전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따라 2020년 1월 15일까지 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온라인 교육
	▷ 신규 지도전문의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자	기초교육 이수 후 수련병원(기관)장으로부터 지도전문의로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한병원협회 교육방법: 대한병원협회 온라인 지도전문의 교육센터(<http://kha.hunet.co.kr>)에서 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 대한병원협회 교육비: 기존 지도전문의-무료, 신규 지도전문의-1만원

2. 정기교육(=재교육) 안내

구분	교육대상	교육주기	교육방법
정기 교육 (8시간) = 공통교육 (4시간) + 학회교육 (4시간)	▷ 기존 지도전문의 종전 규정에 따라 받은 지도전문의 교육(최초교육·재교육)은 개정 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으로 인정됨	종전 규정에 따른 최종 지도전문의 교육 수료 일자 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8시간(공통교육 4시간, 학회교육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온라인 교육
	▷ 신규 지도전문의	지도전문의로 새로 지정(기초교육 이수 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기교육(대면 교육)을 받아야 함	
		3년(최초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다 8시간(공통교육 4시간, 학회교육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대면 교육

- 대한병원협회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2019. 09. 09(월)부터 시행 예정(<http://kha.hunet.co.kr>), 대면교육 세부일정 추후 공지
- 대한병원협회 교육비: 온라인 교육-1만원, 대면 교육-3만원
- 대한신경과학회 2019년도 추계 지도전문의교육(4시간): 2019. 12. 07(토) 국립중앙의료원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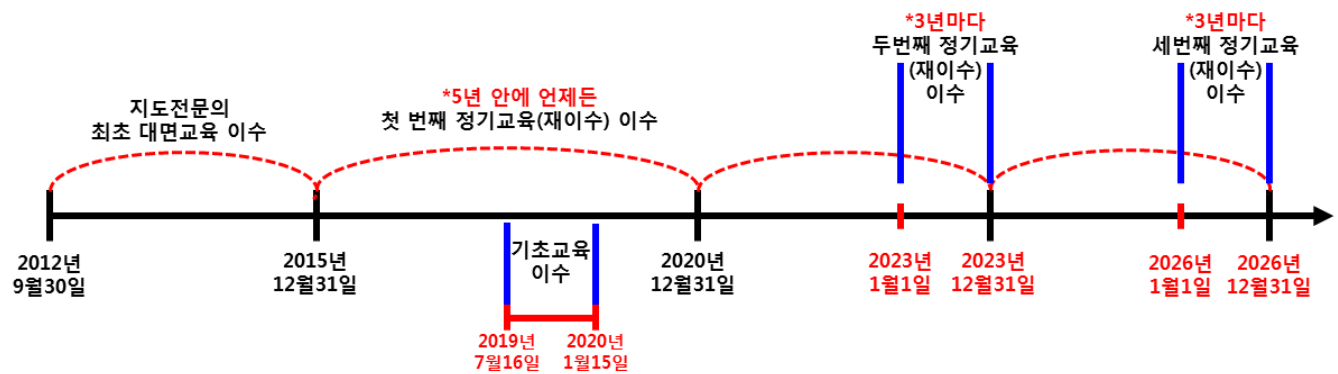
3. 지도전문의 재교육 주기 사례별 안내

① 2012년 9월 30일 이전 지도전문의: 2015년까지 최초 교육 이수

대상자	교육 주기
2012년 9월 30일 이전 지도전문의 (수련병원(기관) 종사경험 1년 이상인 자)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도전문의 교육(공통·학회)을 이수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후 정기교육 주기는 2021년부터 3년마다 로 함

▶ 예시1) **2015년까지 최초 교육 이수** → 2020년까지 재교육 이수(*2020년 12월 31일까지 언제든 이수 가능) → 3년마다 재교육 이수(*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교육 이수)

※ 정기교육 이수 시점: ①2020년까지 이수, ②2023.1.1~2023.12.31 이내 이수, ③2026.1.1~2026.12.31 이내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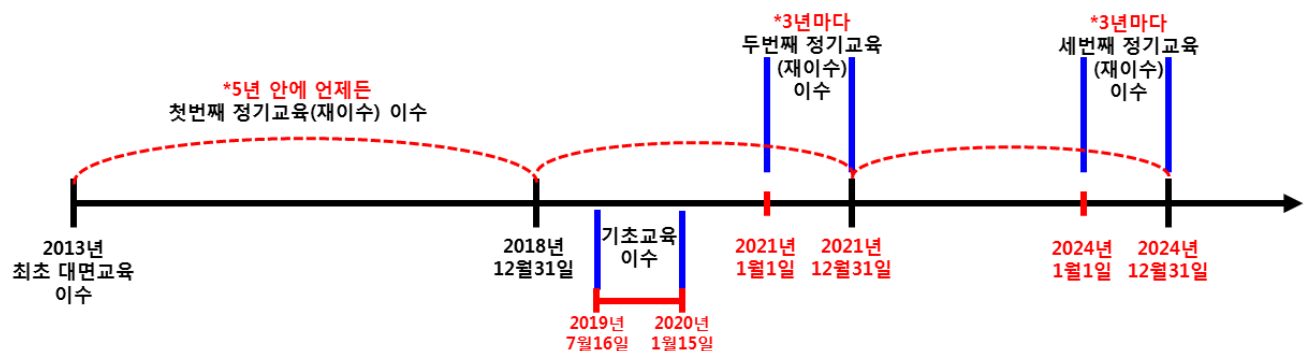


② 2012년 10월 1일 이후 지도전문의: 2013년에 최초 교육 이수

대상자	교육 주기
2012년 10월 1일 이후 지도전문의 (해당 전문과목 수련병원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최초 교육(8시간 교육 이수 완료 시점)을 이수한 연도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후 정기교육 주기는 3년마다 로 함

▶ 예시1) **2013년 최초 교육 이수** → 2018년까지 재교육 이수(*5년 이내 언제든 이수 가능) → 3년마다 재교육 이수(*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교육 이수)

※ 정기교육 이수 시점: ①2018년까지 이수, ②2021.1.1~2021.12.31 이내 이수, ③2024.1.1~2024.12.31 이내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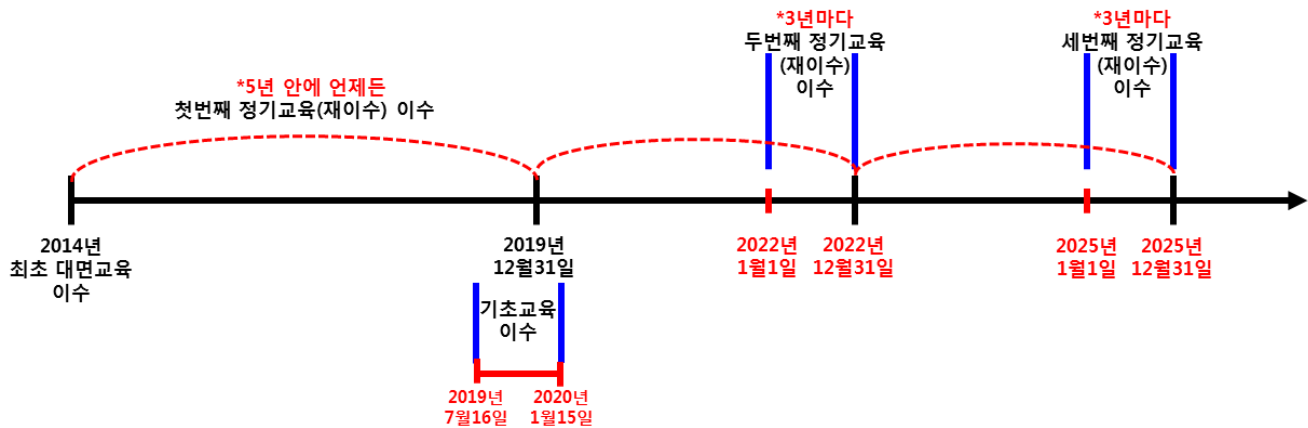


② 2012년 10월 1일 이후 지도전문의: 2014년에 최초 교육 이수

대상자	교육 주기
2012년 10월 1일 이후 지도전문의 (해당 전문과목 수련병원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최초 교육(8시간 교육 이수 완료 시점)을 이수한 연도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후 정기교육 주기는 3년마다 로 함

▶ 예시2) **2014년 최초 교육 이수** → 2019년까지 재교육 이수(*5년 이내 언제든지 이수 가능) → 3년마다 재교육 이수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교육 이수)

※ 정기교육 이수 시점: ①2019년까지 이수, ②2022.1.1~2022.12.31 이내 이수, ③2025.1.1~2025.12.31 이내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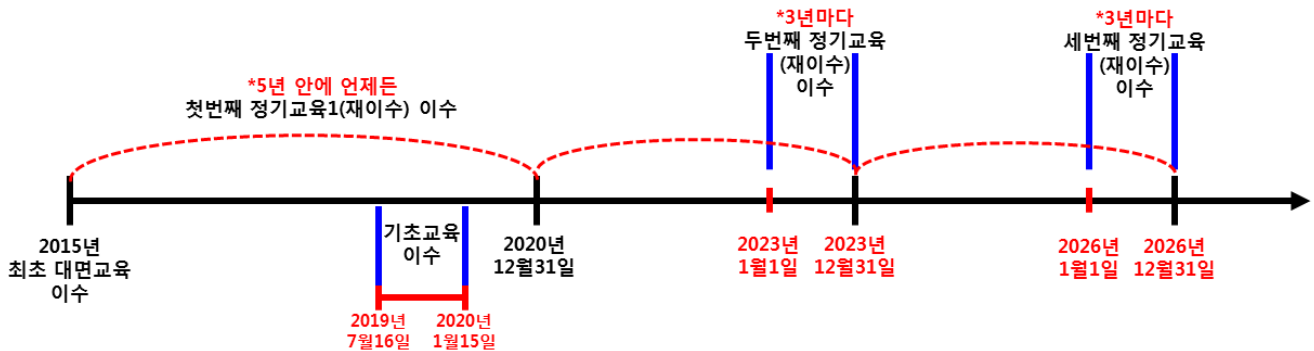


② 2012년 10월 1일 이후 지도전문의: 2015년에 최초 교육 이수

대상자	교육 주기
2012년 10월 1일 이후 지도전문의 (해당 전문과목 수련병원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최초 교육(8시간 교육 이수 완료 시점)을 이수한 연도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후 정기교육 주기는 3년마다 로 함

▶ 예시3) **2015년 최초 교육 이수** → 2020년까지 재교육 이수(*5년 이내 언제든지 이수 가능) → 3년마다 재교육 이수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교육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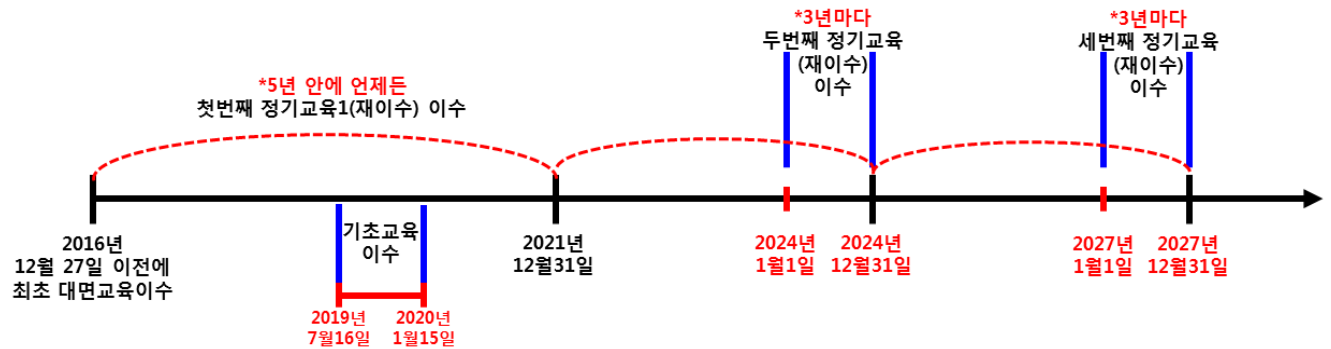
※ 정기교육 이수 시점: ①2020년까지 이수, ②2023.1.1~2023.12.31 이내 이수, ③2026.1.1~2026.12.31 이내 이수



② 2012년 10월 1일 이후 지도전문의: 2016년에 최초 교육 이수

대상자	교육 주기
2012년 10월 1일 이후 지도전문의 (해당 전문과목 수련병원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최초 교육(8시간 교육 이수 완료 시점)을 이수한 연도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후 정기교육 주기는 3년마다 로 함

- ▶ 예시4) **2016년 12월 27일 이전 최초 교육 이수** → 2021년까지 재교육 이수(*5년 이내 언제든지 이수 가능) → 3년마다 재교육 이수(*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교육 이수)
- ※ 정기교육 이수 시점: ①2021년까지 이수, ②2024.1.1~2024.12.31 이내 이수, ③2027.1.1~2027.12.31 이내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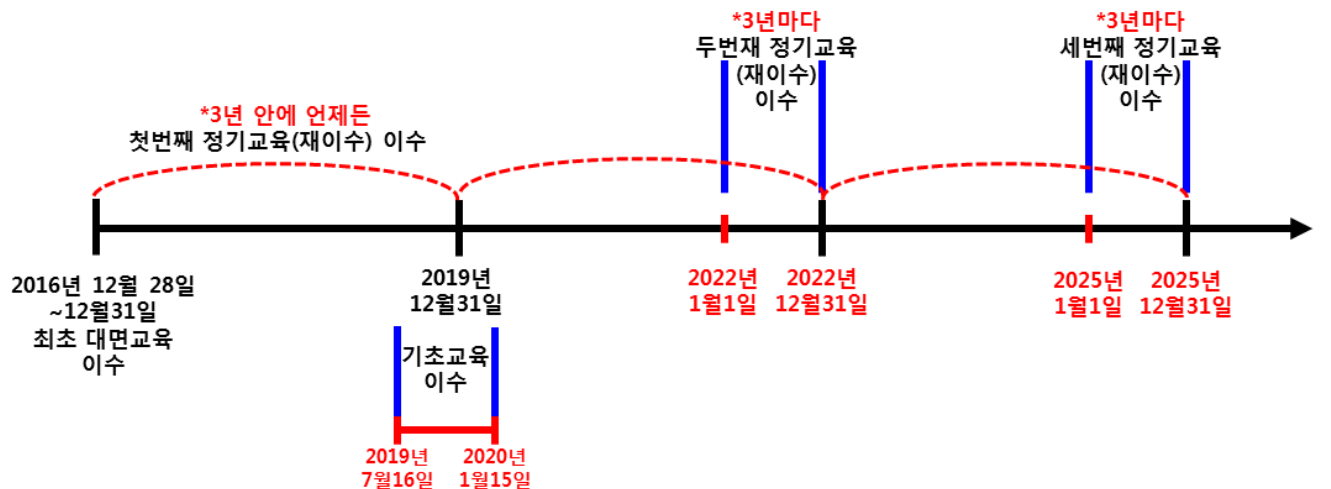


③ 2016년 12월 27일 이후 지도전문의: 2016년 12월 28일 ~ 12월 31일 최초 교육 이수

대상자	교육 주기
전공의법 시행규칙(2016.12.27) 이후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자	▶ 최초 교육(8시간 교육 이수 완료 시점)을 이수한 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후 정기교육 주기는 3년마다 로 함

- ▶ 예시1) **2016년 12월 28일 ~ 12월 31일 최초 교육 이수** → 2019년까지 재교육 이수(*3년 이내 언제든지 이수 가능) → 3년마다 재교육 이수(*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교육 이수)

※ 정기교육 이수 시점: ①2019년까지 이수, ②2022.1.1~2022.12.31 이내 이수, ③2025.1.1~2025.12.31 이내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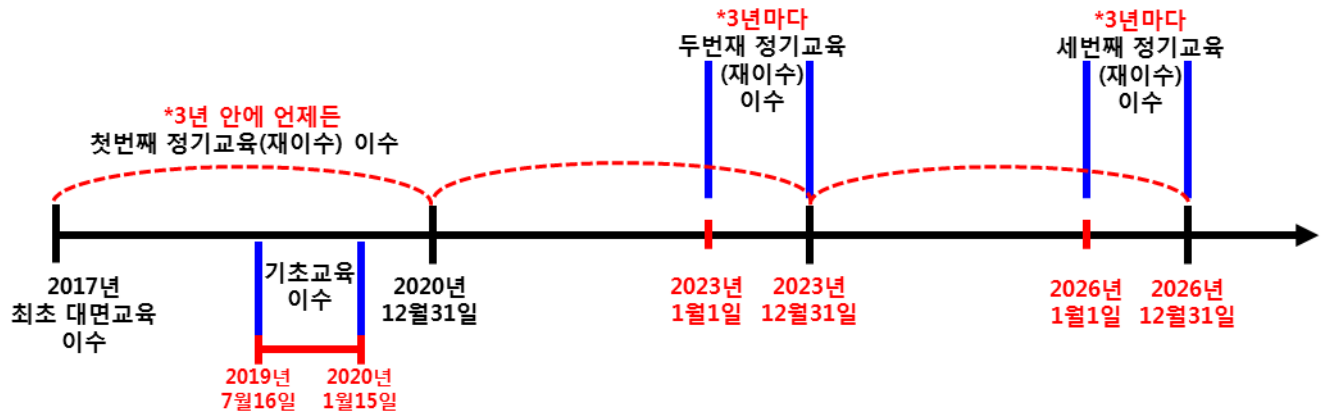


③ 2016년 12월 27일 이후 지도전문의: 2017년에 최초 교육 이수

대상자	교육 주기
전공의법 시행규칙(2016.12.27) 이후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자	▶최초 교육(8시간 교육 이수 완료 시점)을 이수한 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후 정기교육 주기는 3년마다 함

▶ 예시1) **2017년 최초 교육 이수** → 2020년까지 재교육 이수(*3년 이내 언제든지 이수 가능) → 3년마다 재교육 이수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교육 이수)

※ 정기교육 이수 시점: ①2020년까지 이수, ②2023.1.1~2023.12.31 이내 이수, ③2026.1.1~2026.12.31 이내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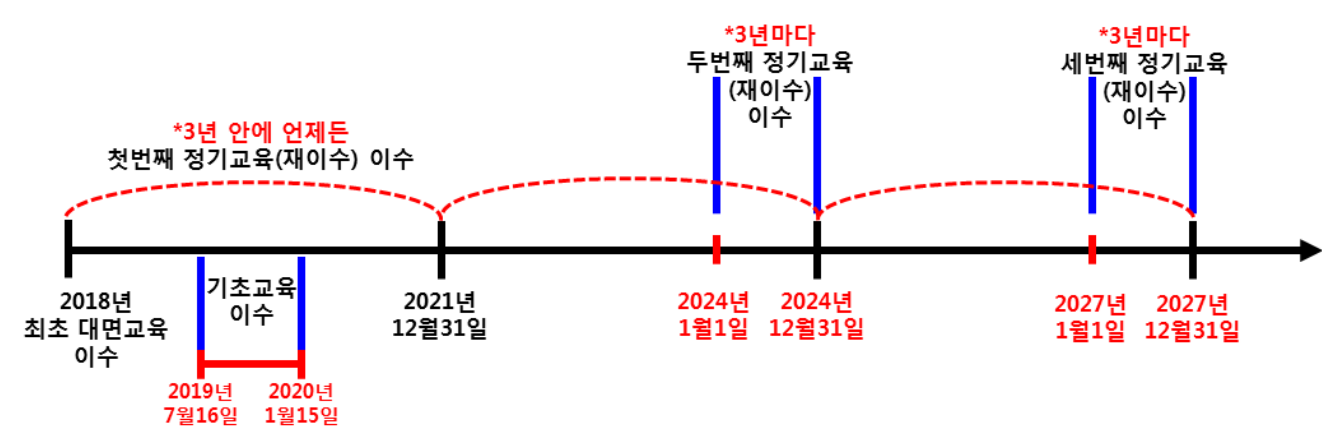


③ 2016년 12월 27일 이후 지도전문의: 2018년에 최초 교육 이수

대상자	교육 주기
전공의법 시행규칙(2016.12.27) 이후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자	▶최초 교육(8시간 교육 이수 완료 시점)을 이수한 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후 정기교육 주기는 3년마다 함

▶ 예시2) **2018년 최초 교육 이수** → 2021년까지 재교육 이수(*3년 이내 언제든지 이수 가능) → 3년마다 재교육 이수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교육 이수)

※ 정기교육 이수 시점: ①2021년까지 이수, ②2024.1.1~2024.12.31 이내 이수, ③2027.1.1~2027.12.31 이내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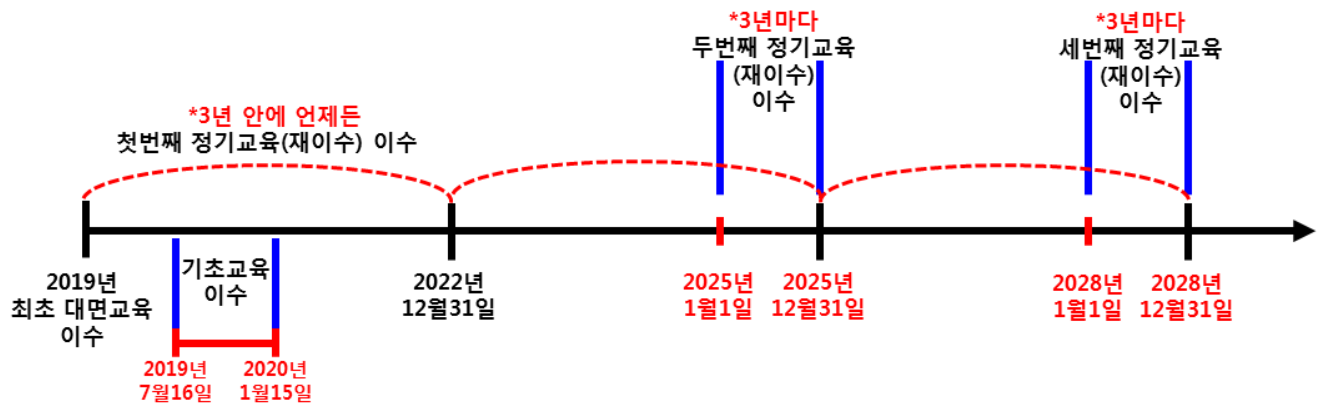


③ 2016년 12월 27일 이후 지도전문의: 2019년에 최초 교육 이수

대상자	교육 주기
전공의법 시행규칙(2016.12.27) 이후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자	▶최초 교육(8시간 교육 이수 완료 시점)을 이수한 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후 정기교육 주기는 3년마다 함

▶ 예시3) **2019년 최초 교육 이수** → 2022년까지 재교육 이수(*3년 이내 언제든지 이수 가능) → 3년마다 재교육 이수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교육 이수)

※ 정기교육 이수 시점: ①2022년까지 이수, ②2025.1.1~2025.12.31 이내 이수, ③2028.1.1~2028.12.31 이내 이수



4. 안내사항

- 개정된 전공의법(시행: '19년 7월 16일) 이전에 대면교육을 하나(4시간)만 받은 신규 지도전문의의 경우,
해당 잔여 교육을 '19년 12월 31일까지 받아 8시간 이상이 된다면 개정 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으로
인정 (그렇지 않은 경우 올해 이미 들은 4시간은 무효가 됨)
- 종전 지도전문의 교육(공통교육(4시간), 학회교육(4시간))에 대한 이수연도가 다를 경우, 두 교육 중
후 순위로 수료한 교육의 이수 연도를 기준으로 정기교육(재교육) 시점 산정

사례	구분	최초교육 이수 날짜	정기교육(재교육) 이수 인정일	두 번째 정기교육(재교육) 이수기한
1	공통교육	2016. 12. 26.	2016년 12월 27일 이전은 5년 안에 재이수이므로, 2021. 12. 31. 까지	2024. 01. 01. ~ 2024. 12. 31.
	학회교육	2015. 06. 24.		
2	공통교육	2017. 03. 25.	2016년 12월 27일 이후는 3년 안에 재이수이므로, 2022. 12. 31. 까지	2025. 01. 01. ~ 2025. 12. 31.
	학회교육	2019. 06. 26.		